

외국논문

일본 매스컴 판례 연구

秋吉健次

매스컴윤리간담회 전국협의회 고문

이 글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발행하는 <월간민방> 1998년 1, 2, 3, 4월 호에 연재된 "매스컴 판례연구 7, 8, 9, 10"을 번역한 것이다. 1, 2, 3은 98년 봄호에, 4, 5, 6은 여름호에 게재했다……편집자 주

1. 명예훼손 소송에서 '오프 더 레코드' 보도와 진실성의 증명

1. 1심 500만 엔이 항소심에서 역전

요미우리신문은 81년 5월 24일자 사회면 톱(Top)에 "또 변호사가 '검은 실점'이라는 큰 제목과 "도주폭력단에 검사조서 넘어가다", "사례금(?)도 받았다", "재판자료의 복사 지검 위법혐의로 추궁" 등의 작은 제목을 붙여 X 변호사의 사진을 곁들인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폭력단원의 각성제 불법소지 사건을 둘러싸고 공범자 5의 검사조서 등의 공판자료가 담당변호사(원고)를 통해 도주 중인 범인 T에게 넘겨져 있는 등 변호사인 원고가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동경지점이 원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안겨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요미우리신문사에 대해 5,000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인 동경지방법재판소(88년 7월 25일 판결)는 "본건 기사의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더욱이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신용이 침해된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판단에서 본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본건 기사의 주요부분이 대해 진실이라는 입증이 없고 또한 피고 신문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 요미우리신문사에 대해 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피고신문사는 항소했으며 2심인 동경고등재판소(89년 10월 17일 판결)는 진실성의 증명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1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 변호사는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90년 7월 20일 판결)은 이를 기각했다.

2. 공인이나 준공인의 손해배상액

2심에서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500만 엔의 위자료는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극히 높은 액수이다. 1심 판결은 "공적 존재 혹은 그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인보다는 면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가 제한되나 명예 또는 신용훼손의 성립이 인정될 때에는 그 손해는 일반적으로 심각하여 손해배상은 순수한 사인에 대한 배상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고액사례로서는 월간지 <선택>의 석유회사 사장에 대한 내부자거래 의혹 보도사건(1심 동경지방법재판소 95년 3월 14일 판결 2심 동경고등재판소 95년 9월 26일 판결), <월간신문>의 섬유화장품 등 회사 전 사장 및 동사에 대한 분석 결산 보도사건(원고는 회사. 동경지방법재판소 93년 7월 16일 판결. 동경고등재판소 93년 9월 7일 판결)에서 각각 500만 엔이 인용되고 있는데 모두 1부 상장회사의 경영인과 관련된 것이다.

3. 위법성 조각사유에 엄격한 1심 판단

본건 원고 X가 5의 검찰조서를 직접 건네주었다는 상대방 O는 폭력단원으로 S와는 형님·동생하는 관계에 있으며 도주 중 T와도 교분이 있었다. 또한 X는 이들 3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 도와준 일이 있다.

본건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진실성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기자는) 동경지청 검사로부터 원고를 규탄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의 취재였는지'는 밝혀진 바 없으며 위 발언이 비공식적인 발언이라든가 위 공판의 경과로 보아 동경지검의 방침이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적어도 본건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 동경지검이 원고를 규탄할 의도로 법정에서 T의 조서입수 경위를 해명할 방침이었다는 취지의 본건 기사부분은 아직까지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하물며 동경지검이 원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방침이었다는 것 등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있어 적극적인 근거로 한 것은 기사가 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검사의 비공식 발언이 주었는데 보도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책임 면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발언의 취재 정도를 가지고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독자적인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층 더 취재에 진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2심은 진실성 증명과 상당성을 인정

"O로부터 피항소인에게 건네진 3만 엔이 진술조서 등의 대여에 대한 사례였는지의 여부, 나아가서는 피항소인이 T의 수중에 건네지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진술조서 등을 대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건 기사는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으나 "항소인 측으로서는 3만 엔은 진술조서 등의 대여사례로 수수된 것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 밖의 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본건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다."고 했다.

나아가 X의 행위를 형사소송법, 변호사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한 논평에 대해 "항소인 측이 믿었던 것처럼 S의 진술서가 T의 수중으로 건네지는 것을 피항소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대여행위는 직무상 것처럼 S의 비밀누설에 해당되어 전기규정(변호사법 12 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한 점은 "법해석상으로 말하면 정당한 논평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 평가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본건 기사 자체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어 그것이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과 위의 법규위반의 평가가 부당한 비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기인정 사실에서 밝혀졌으며 또한 그 내용이 전제인 사실관계와의 대비에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본건 기사의 게재를 위법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그 밖의 점에서는 항소인이 상당한 이유에 의해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 위의 논평은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5. 진실증명의 입증과 취재원 비닉

피고신문사측은 "원고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 47 조, 변호사법에 저촉될 혐의가 짙다."는 등, 동경지검의 복수의 검사로부터 취재한 사실, 나아가 위 법률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최고검찰청검사와 고검검사에게 질문, 위법이라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다는 것 등을 주장했으나 1심 판결은 "증인 A(기자)는 위 동경지정경사, 고검검사, 최고검 검사에 관해 어느 누구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A의 위 청취의 유무, 청취내용의 구체성 및 정확성, 발언자의 의도 등을 조금도 음미할 수 없으며 위 청취내용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정보제공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인 A의 각 증언을 그대로 모두 채택할 수는 없다. 취재원 비닉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방해증언 내용의 증명력이 약해져 피고측의 입증 책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1심 판결은 취재원 비닉에 의한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신문사측의 진실증명과 상당성의 주장을 물리치고 있는 셈이다.

II.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명·비칭 보도의 문제점

1. 실명·비칭 소송의 개요

본건 원고 A가 소유한 쓰레기수거차의 뚜껑이 갑작스럽게 떨어져 종업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일본의 三重현 鳥羽경찰서는 A에게 과실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입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984년 1월 20일 동 경찰서는 이 사건의 송치사실을 공표했으며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3개 신문은 21일자 조간에 A의 실명을 비칭하여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소외 주니치신문은 A에게 '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여 보도했다.

그 후 A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A는 위의 3개 신문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三重현과 신문 3사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그 소송에서 신문사의 실명비칭 보도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 상·하급심 모두 실명 비칭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1심인 지방재판소(88년 8월 21일 판결)는 烏羽경찰서 경찰관이 보도기관에 사건을 공표한 사실 등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피고 三重현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피고신문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본건 기사의 각 게재보도는 수사당국의 공표 내용에 근거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 표현 방법으로 보아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음이 명백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 내용도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기각했다.

본건 기사 중 "원고의 실명을 밝히고 또한 경칭을 쓰지 않고 비칭한 것은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 판결은 "범죄보도를 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 또한 그 사람에게 경칭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는 문제는 그 범죄의 내용, 피해자나 시민의 감정 및 그 당시의 사회통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본건 기사와 같이 수사기관이 공표한 범죄에 대해 그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되고 이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원고의 위 피의사실의 내용 등을 아울러 생각할 때 피고신문사 등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경칭을 쓰지 않은 실명을 보도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명고옥 고등재판소 90년 12월 3일 판결)은 1심 판결과 거의 같은 이유를 붙여 시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실명비칭 보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의 판시를 부연하여 상세하게 일반론, 구체론을 판시, 본건에서는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 사이의 89년 11월 마이니치신문이 비칭보도의 폐지를 단행했으며 동년 12월부터는 신문·방송 등 대부분의 보도기관들이 이를 따랐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이들 새로운 보도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용의자'를 이름 아래에 붙이기로 한 각 사의 기준은 그 후 약 6년간에 걸쳐 사회전반의 인권의식의 고양, 활발한 논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각 보도기관이 지금까지의 기사보다도 한층 더 타당한 것을 지향하는 건전한 진취성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본건 기사가 위법이라는 것을 각 피항소인 신문사들이 자인하여 이를 시정, 보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은 채용될 수 없다."

또한 상고심(최고재판소 제3소 법정, 93년 3월 2일 판결)은 상고인 A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피상고인 신문 3사가 본건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혐의로 상고인이 경찰에 송치된 취지의 기사를 각 신문지상에 게재하여 보도함에 있어 상고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하면서 비칭의 형식으로 표기한 점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시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같은 유형의 소송사례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실명·비칭에 관한 소송은 원래 사례가 드물며 특히 보도각사가 "신문보도기준"을 채용하면서 실명보도는 별도로 하더라도 비칭보도의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기준 채용 전의 다른 사례를 소개한다.

북한 스파이사건보도 소송에서 원고는 실명·비칭 보도에 의해 명예·신용을 현저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보도는 88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각 신문에 게재된 것이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그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에 경칭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横濱지방법판소 제 8 민사부 판결(각 94년 4월 22일)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기사의 내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과는 별개로 실명이 공개되었다든가 또는 그 실명에 경칭이 붙여지지 않았다는 것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사 속의 인물에 경칭을 붙이느냐의 여부는 기사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보도기관이 그 상당성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경칭이 붙여지지 않았다는 것만을 들어 명예훼손을 논할 여지는 없다."

또한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이 원고를 실명·비칭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도 横濱지방법판소 제 1 민사부 판결(각 95년 7월 10일)은 앞서서와 거의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신용을 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실명보도 원칙과 용의자, 피고 등 호칭의 현황

피의자·피고인을 실명으로 할 것인지 익명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신문사에서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Y 신문사의 기술원칙을 보면 "체포된 용의자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쓴다. 지명수배된 때에도 같다. 어느 경우에도 실명 아래에 '용의자'를 붙인다. 다만 용의자의 관련장소의 수색만이 선행돼 있을 때에는 직함이나 [씨]를 붙인다. 결과가 중대한 과실사건의 용의자는 실명으로 쓴다."고 되어 있다. 현재 "용의자", "피고" 등의 호칭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가 모두 비슷하나 참고적으로 N 신문사의 사례를 소개한다

"피의자, 피고인은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의자에게는 '용의자', 피고인에게는 '피고'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칭을 붙이지 않는 경우 인권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호칭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배려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기자의 취재 자세라든가 기사의 내용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지 호칭을 붙이기만 하면 인권을 배려한 것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호칭은 기호가 아니다."라고 하고는 그 기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체포 단계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이름 아래에 "용의자"를 붙인다. ② 불기소(혐의 없음)인 때에는 경칭을 붙인다. ③ 기소유예, 처분보류의 경우에는 경칭 또는 직함을 붙인다. ④ 기소 후 판결확정 때까지는 "피고"로 한다. 직함도 쓴다. ⑤ 유죄확정 후에는 경칭을 붙이지 않는다. ⑥ 형기만료 전의 가석방은 "전피고"를 붙인다. ⑦ 무죄확정 후, 형기만료 후에는 경칭을 붙인다. ⑧ 가정재판소심판 불처분은 경칭을 붙인다. ⑨ 재심청구 단계, 재심청구 기각은 비칭으로

한다. 재심개시의 결정이 나왔을 때에는 "전피고"로 한다. 재심공판 중에는 "피고"로 한다. ⑩ 시효성립의 경우에는 경칭 또는 직함을 붙인다.

III. 명예훼손 소송에서 형사사건 관련 텔레비전 보도

이번에는 방송국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고급관료와 정치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례를 살펴본다.

원고인 고급관료 A는 경찰 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경찰청에서 총무청으로 자리를 옮겨 교통안전대책실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NHK, 요미우리신문, 공동통신사와 그 가맹사를 제소한 사건이다.

정치가와 관련된 사건은 이른바 현금의혹 보도로, 보도 당시 현직 국무장관 이었던 渡邊美智雄 씨가 TBS를 제소한 사건인데, 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유족이 소송 계승인이 되었다.

두 사건 모두 형사사건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1. 고급관료의 수뢰의혹 재판

88년 6월 30일 NHK의 TV 뉴스는 본건 원고 A가 단골 광고업자 B로부터 현금을 받은 의혹을 지적하면서 수뢰죄는 시효가 되었으나 다시 같은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본건의 업자 B는 총리부 대신 관방참사관 C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건 원고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진술하여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C는 수뢰, B는 증여의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 되었다.

또한 NHK의 방송이 있었던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오직 혐의로 본건 원고 A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B로부터 음식접대와 현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 등을 보도했다.(88년 6월 30일자 외 2회)

A는 NHK에 대해 위자료 5백만 엔과 정정보도를, 요미우리신문사에 대해서는 위자료 1천 5백만 엔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경지방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병합심리 하여 96년 3월 27일 원고가 경찰청에서 임의로 사정청취를 받았다는 취지의 TV 보도는 진실이라고 판단, NHK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단골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신문보도는 진실이 아니고 또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요미우리신문사에 대해 1백 5십만 엔의 위자료 지불을 명했다.

또한 공동통신사의 통신기사에 근거하여 동 통신사 가맹 각 신문사는 88년 6월 30일자 지면에 "총무청 오직 경찰관료에 파급"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는데, A는 이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공동통신사, 집필기자, 가맹신문사 등 28명을 상대로 총액 1억 5천 8백만 엔의 위자료와 사죄광고 등을 청구했다.

1 심 동경지방법재판소는 본건 기사가 진실이라는 피고 공동통신사 등의 항변을 인정,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93년 3월 23일 판결) 또한 항소심 동경고등재판소는 1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다.(95년 11월 9일)

2. NHK와 요미우리신문사에 대한 판결내용

본건 판결은 본건 방송내용 중 "원고는 교통안전대책실 참서관보 재직 중에 총리부 오직으로 이미 체포된 상태에 있는 광고업자로부터 현금 1백만을 받은 혐의 및 교통안전대책실장 재직 중 광고업자로부터 요리집 등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동경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사정청취를 받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 시청자에게 원고가 이미 체포되어 있는 광고업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때문에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결백에 관한 한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경찰관으로서의 경력과 교통안전대책실장이라는 요직에 있는 원고의 직무 및 지위를 감안할 때 이러한 내용의 방송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건 신문보도의 사실적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우선 TV 보도 및 신문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다음 진실증명 또는 상당성에 대해서는 본건방송보도 가운데 "광고업자로부터의 금품수령 및 접대를 받은 혐의에 의해 동경지방검찰청에서 사정청취를 받았었다는 사실의 적시에 대해 진실성의 증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전제한 다음 "의혹에 관해 원고에 대한 사정청취가 있었다는 것은 진실로 인정된다."고 판단, 원고의 피고 NHK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본건 신문기사 가운데 접대나 금품수령의 혐의가 있다고 한 점에 대해 "어떠한 취재방법에 의해 그러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또 그 정보에 어떠한 입증이나 신뢰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전기 적시사실에 대해 "피고신문사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3. 정치인의 명예훼손과 TV 보도

정치인에 관한 명예훼손 소송은 신문, 주간지에 대해서는 많으나 방송이 피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 渡邊美智雄 씨는 본건 보도당시 부총리겸 외무장관이었다. TBS는 92년 8월 27·28일 이들 동안 3회에 걸쳐 TV프로 "뉴스의 숲에서" 특별배임죄로 체포기소된 회사경영자 D(동경좌천급편·전사장)가 동경지검 특수부의 조사과정에서 渡邊美智雄 씨에게 잘 봐달라고 1억엔을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본건 각 방송의 시기는 동경좌천급편 전사장 D가 특별배임혐의로 체포되어 좌천급편문제가 일대 스캔들화 되어있던 시기였으며, 정계에 대한 자금제공 소문도 있었고 김환 자민당부총재에

대한 5 억엔의 자금제공이 보도되어 김환 부총재가 5 억엔의 현금을 인정, 부총재직을 사임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渡邊 씨는 본건 방송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TBS 에 대해 사죄광고(전국지 4 개지)게재, TV 방송프로 중의 사죄성명의 방송, 손해배상 5 백만엔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했다.

동경지방법재판소는 96 년 7 월 30 일 소송 계승인에게 2 백만엔을 지불하도록 TBS 측에 명했으나 사죄광고, 사죄방송의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은 "이러한 시기에 현직 국무장관인 고 渡邊 씨가 동경좌천급편의 전사장 D로부터 종이봉지에 넣은 현금 1 억엔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는 방송을 하는 것은 고 渡邊 씨가 위법한 정치현금 혹은 뇌물 등의 부정한 금전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일반 시청자에게 주게 되므로 고 渡邊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건 각 방송은 고 渡邊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그 보도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진술내용에 대해 그 사실의 진실증명이 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진실이 라고 오신한 데 있어 상당의 이유가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

渡邊 사무소의 반론 및 본인의 방송사를 부인하는 코멘트를 함께 방송했었다는 피고 방송국의 주장에 대해 판결은 "본건 각 방송에서 방송된 정도의 반론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앞에서와 같은 인상을 줄여주거나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건 각 방송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 시청자에 대해 앞에서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IV. 명예훼손 소송에서 로스의혹 보도와 TV 프로그램

1. 머 리 말

"로스의혹 보도소송에서 볼 수 있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전모에 대해서는 <월간방송>지 97 년 5 월 호에 소개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TV 프로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서술한다.

TV 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재까지 나온 1 심 판결은 191 건. 이 가운데 청구인용이 113 건(최고재판소에서 동경고등재판소에서의 환송, 동 고등재판소에서의 화해금 지불 2 건을 포함)이며 배상금 인용총액 4,999 만엔, 청구기각 76 건, 환송 2 건(4 건 가운데 화해 2 건을 제외하고 동경고등재판소에 계속 중)이다.

1 심 191 건 가운데 항소심 79 건, 상고심 17 건이 있으나 청구의 인용, 기각의 상해 및 금액은 상급심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2. TV 프로그램의 제소사건에 관하여

방송에 관한 판결은 모두 TV 프로그램에 것으로 TBS 5 건(이 가운데 계열방송국과 제소된 것이 2 건). TV 아사히, 후지 TV 3 건, TV 1 건으로 모두가 1 심이다.

이 가운데 청구인용은 후지 TV 3 건 계 8 십만 엔, TBS 3 건 계 3 십만 엔, TV 아사히 2 건 계 4 십만 엔, TBS 계열 1 건(TBS와 동시제소) 4 국 계 2 십만 엔. 청구기각은 TBS 2 건, 일본 TV, TV 아사히, TBS 계열국 2 건(TBS와의 동시제소) 각 1 건이다.

96년까지의 개개의 사건은 <월간방송>지 97년 5월 호에 소개했으므로 97년 이후의 4건에 대해 설명 하겠는데 4건 모두 TBS (계열방송국과 동시제소 2건)와 관련된 것이다.

청구를 기각한 1 건(동경지방법재판소 97년 9월 5일 판결)은 TBS의 프로그램 "아침의 핫라인"과 관련된 것으로 TBS, 정강방송, 중부일본방송에 대한 것이다.

청구가 인용된 것은 프로그램 "모리모도 와이드 모닝 EYE(동경지방법재판소 97년 9월 30일 판결)와 구타사건으로 체포된 다음 날의 프로그램 "정보데스크 TODAY"(동경지방법재판소 98년 1월 22일 판결)와 관련된 것이다. 또 다른 1건은 다음에 설명할 TBS와 계열 4개 방송국에 대한 청구 사례이다.

3. 주 방송국과 계열국 쌍방에 손해배상책임

키국과 계열국이 함께 제소된 사례는 2건이나 TBS · 정강방송 · 중부일본방송사건은 청구기각이기 때문에 계열국의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TBS, 홋카이도방송, 동북방송, 신석방송, 정강방송사건(동경지방법재판소 97년 12월 9일 판결)은 TBS(제 1 사건 피고)에 1 십만엔, 계열국(제 2 사건 피고)에 각각 5 만엔의 지불을 명하고 있다.

후자는 "3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 인데 판결은 "본건 방송은 N에 대해 원고가 N의 처를 살해하는 대신 원고의 처를 살해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 외에 F 및 Y에 대해 원고의 처의 살해를 교사했다고 하는 내용의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며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제 한 다음 제 2 사건 피고 등 (계열방송국)에 고의 및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는 다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판단 "본건 방송은 원고가 살인의 교사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된다."고 했으나 "이것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며 본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리고 피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고의 또는 과실의 조각사유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 계열국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

제 2 사건 피고 등은 계열국으로서 주방송국인 제 1 사건 피고(TBS)와의 사이에 텔레비전 네트워크협정(이하 "본건 협정"이라고 한다)을 맺고있기 때문에 "본건 방송은 제 1 사건 피고가 제작하는 생방송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본건 방송의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변경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본건 방송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피고 등에 대해 제 1 사건 피고와 공동 취재하는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방송을 회피해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제 2 사건 피고 등은 본건 협정을 체결하고 제 1 사건 피고로부터 송출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그대로 각 지역에 방송하도록 결정한 것이므로 이에 의해 방송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 2 사건 피고 등은 본건 협정에 근거한 방송에 의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했어야 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로 본건 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 명예훼손을 일으킨 것이므로 결과의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한 다음 "제 2 사건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과실로 본건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5. 통신사의 기사제공 책임과 매체사의 게재 책임

주방송국의 프로그램과 계열국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관계는 통신사의 통신기사와 매체사(신문사 등)의 게재기사와의 관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참고로 로스의혹 보도 소송에 있어서의 후자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통신사에 공급 책임이 있다고 한 1심 14개 사례 가운데 신문사에 게재 책임이 있다. 13개 사례, 게재 책임이 없다. 1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2심도 게재 책임이 있다. 8개 사례, 게재 책임 없다. 2개 사례로 판단이 갈리고 있다. 2심 판결은 대부분 상고 되어 있어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기다려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게재 신문사측은 공동통신사의 통신기사의 높은 신뢰성, 통신시스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모두 게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통신서비스의 항변"이 판례법상 확립되어 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지금까지 나온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게재 책임이 없다고 한 2심의 2개 판결은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성에 대해서는 통신사 통신기사의 신뢰성뿐 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의 판단이다.

통신서비스의 항변은 濱田純一 동경대학교수 "통신사 통신기사의 게재 책임과 보도의 자유"(동경대학 사회정보연구소), 田島泰彦 신내천대학 단기대학부교수 "통신기사 게재와 명예훼손"(법률시보 69 권 3 호), 紙谷雅子 학습원대학교수 "명예훼손과 통신서비스의 항변"(법률시보 69 권 7 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6. 맺는 말

통신사의 통신서비스의 항변이 미국에서 판례법상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 또 보도시스템도 사법제도도 다른 일본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기다려진다. 동시에 방송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협정도, 계열방송국의 보도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의 판결에서 계열국 측의 갖가지 주장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한층 더 이론적인 정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